

지방의제21 제도화방안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1. '지방의제21 제도화'의 목적

- 지방의제21은 지방자치(녹색분권)와 접목되어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고 지방자치의 중심제도로 자리매김하는 통합적 지방발전모델임.
- 지방의제21의 제도화는 지방자치·행정의 핵심주체로 지방의제21을 제도화하는 것으로 단기적으로 참여정부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계획을 지방의 지속가능발전과 병행하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 속에서 주민참여형 민주적 지방자치제(지방거버넌스)를 통해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 것임.

2. 지방의제21의 현황

- 전국 250개 지방자치단체 중 78%인 196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제21 수립하였고, 12%인 30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제21을 수립 중에 있음.
- 2004년 4월 기준으로 지방의제21 추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지자체는 210곳, 상설사무국을 설치한 지자체는 78곳, 비상임사무국장을 두고 있는 지자체는 32곳임.
- 지방의제21 상설사무국의 예산규모는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나 기초의제의 경우 대개 500만원 내외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음.

3. '지방의제21 제도화방안' 추진경과

가. 대외협력교육전문위 지방의제21연구소위('04년 5월), 연구팀('04년 5월) 구성

- 제1차 전문위원회 전체회의('04년 3월)에서 지방의제21 제도화방안 연구를 전문위 과제로 결정하여 연구소위와 연구팀 구성 확정
- 지방의제21소위는 이창우 소위원장, 유문종 소위원총무, 소위원 6인(강형신 환경부과장, 김경량, 박효숙, 이정수, 임낙평, 한경호 위원)을 위촉하고 지방의제21연구팀의 진행된 연구내용을 심의

- 지방의제21연구팀은 조명래(연구팀장), 유문중(연구팀총무), 연구위원 4인(이기우교수, 이정수위원, 정규호박사, 김종동)을 위촉, ‘지방의제21제도화방안’ 연구를 추진하고, 지역간담회를 통해 관련 현장활동가,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 나. 지방의제21소위, 연구팀 회의 개최

- 지방의제21소위 및 연구팀은 확대회의를 2차례(5.29/10.7) 개최
 - 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 활동현황, 지방의제21 발전과정, 지방의제21 활성화 방안, 지방의제21 공청회 계획안 등에 대해 토의

【별첨1】 지방의제21 소위 및 연구팀 확대회의 결과 회의록 참조(자료 p. 3)

- 지방의제21 연구팀은 6차례(5.11/5.29/7.8/7.20/8.3/8.27) 회의 개최
 - 기존 연구성과 검토, 연구분담과 진행방안, 연구목차 구성, 지역간담회 개최 방안 등에 대해 토의

【별첨2】 지방의제21 연구팀 회의록 참조(자료 p.6)

- 주요 연구내용으로는 지방의 지속가능발전과 녹색분권, 한국 지방의제21의 평가와 문제점, 해외사례, 지방의제21의 제도화를 위한 방향, 지방의제21과 제의 제도화, 지방의제21의 추진을 위한 기구의 제도화, 지방의제21의 제도화 기반 등으로 구성

【별첨3】 지방의제21의 제도화방안 연구목차 참조(자료 p. 13)

다. 지방의제21 연구팀 지역간담회 3차례 개최

- 호남·충청지역간담회(9.11), 수도권·강원지역간담회(10.7), 영남·제주지역간담회(10.16)를 개최하였으며, 각 지역 지방의제21 현장활동가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동 방안 연구에 적극 반영할 예정

【별첨4】 지방의제21 제도화방안 지역간담회 회의록 참조(자료 p. 16)

【별첨5】 지방의제21 제도화방안 연구목차 대비 지역간담회 의견정리 참조(자료 p. 22)

4. ‘지방의제21 제도화방안’을 위한 향후 계획

가. 지방의제21 연구팀 연구용역 체결 ('04년 10월 중)

나. ‘지방의제21 제도화방안’ 1차 연구시안 완성 이후 공청회 개최('04년 12월)

다. ‘지방의제21 제도화방안’ 대통령국정과제 보고 ('05년 상반기)

【별첨1】

대의협력·교육 전문위원회 지방의제21 소위 및 연구팀 제1차 확대회의 결과

1. 일시 및 장소: 2004.05.29.(토), 11:00~13:00, 지속위 제2회의실
2. 참석자 : 조명래(총무위원/연구팀장), 유문종(소위총무), 박효숙, 이정수, 임낙평, 한경호 위원, 강형신(소위위원, 노회경사무관 대참), 이기우 교수, 신형은(대의협력팀장), 김현정(대의협력팀)
3. 토의 안건
 - 1) 지방의제21 제도화 방안
 - 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 활동현황과 우리나라 지방의제21 발전과정에 대한 검토 (발제: 유문종 위원)
 - 지방의제21 활성화 방안: 방향설정을 위한 제언 (발제: 이정수 위원)
 - 지방의제21 제도화 방안 연구과제 제안서 (발제: 조명래 팀장)
 - 2) 지방의제21 실천전략 연구방향
 - 3) 소위와 연구팀의 역할 분담

4. 토의 및 결정사항

1) 토의 주요 요지

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는 2000년 수원에서 창립하여 2001년 정책포럼 개최 및 WSSD 지방의제21 준비위원회 구성 등의 활동을 했음. 2002년 WSSD 회의참가 이후 한편으로는 지방의제21 활동의 안정화가 이루어졌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일부 지역에서의 단체장이 교체되면서 지방의제21의 활동이 축소되는 어려움도 있었음. 2003년 마을의제21 네트워크사업, 녹색구매 및 물 관련 캠페인사업, ICLEI 총회참가 등 지방의제21 사업의 독자성이 강화되어 갔으며, 2004년 3월 현재 16개 광역자치단체 전체 및 232개 기초자치단체 중 201개 단체가 지방의제21을 작성하고 있음

지방의제21에 책정되는 예산규모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나, 실제로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거나 집행하지 않는 기초단체도 있는 실정임. 지방의제21은 지방정부로부터의 자율성 보장과 효율적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임. 지방행동21이 지방의제21 이행을 보장하는 지침이 되어야 하며, 각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모델의 검토가 연구되어야 할 것임.

지방의제21 제도화 방안은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의 실천적 측면과 연계하는 동시에, 지방의제21 추진기구의 안정화를 목적으로 한 지방의제21 촉진법 또는 조례제정 등을 통해 지방의제21 추진운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어야 함.

따라서 지방의제21의 제도화 방안은 단기적으로는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성을 중심으로 참여정부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민주적 지방자치제(지방거버넌스)를 통한 지방의 지속가능발전 실현에 기여해야 함

2) 결정사항

- 지방의제21 연구팀의 구성원은 조명래 팀장, 이창우 간사, 유문종 총무, 이정수 위원, 김형기 교수, 이기우 교수로 하며, 이후 필요시 국토 및 수자원 관련 전문가를 중원 고려
- 지방의제21 연구팀 회의는 일주일에 1회 진행하는 것으로 함
- 지방의제21 소위 정례회의는 지방의제21 연구팀의 진행한 연구성과 내용을 보고받고 토의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 등의 단체에서 참여하는 위원이 중심이 되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지방의제21 연구팀의 지역순회 Workshop 등을 통해 다양한 분야, 지역의 의견이 연구내용에 반영되도록 함
- 연구팀의 연구활동을 보조하기 위해, 조명래 교수(팀장) 추천 연구조교 1인을 두고, 연구팀 회의에 참석시키기로 함

5. 차기 회의 (후추 결정)

대의협력·교육전문위원회 지방의제21 소위 및 연구팀 제2차 확대회의 결과

1. 회의 개요

- 가. 일시 및 장소: 2004. 10. 7. (목), 13:00, 지속위 제2회의실
- 나. 참석자: 이창우(소위원간사), 유문종(소위원총무), 조명래(연구팀장), 강형신, 이정수 소위원위원, 김종동 연구조교, 고재경 팀장, 김현정

2. 안건

가. 보고안건

- (1) 지방의제21 소위원회의 상반기 업무
- (2) 지방의제21 연구팀의 추진실적 및 연구계획

나. 토의안건

- (1) 지방의제21 연구팀의 지방의제21 제도화방안 연구목차
- (2) 지방의제21 소위원회의 하반기 업무계획

다. 기타안건

- (1) 지방의제21 소위원회 회의 정례화

3. 주요 토의내용 및 결과

- 현재 지방의제21 연구팀의 연구진행 결과 각 지역별 기반과 행정능력의 차이가 매우 다양하여 지방의제21 제도화의 방향을 정립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지방의제21 제도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고 있음.

.. 특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분권화가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고, 지역혁신협의회의 개발위주 계획에 지방의제21 관련 기구나 단체의 참여가 배제되고 있는 실정에서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지방의제 21은 매우 중요함.

.. 지방의제21은 전국의 231개 지자체에서 추진 중이나 높은 참여율에 비해 주민들이 주체가 되는 실천운동으로서 미약한 것이 사실임. 이에 환경부는 지방의제21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제21지원조례표준준칙'을 마련하였으며 앞으로 이에 대한 실태파악이 필요함.

.. 지속위도 지방의제 21의 활성화가 평가기준의 하나로 되어 있는 그린시티(green city)의 향

후 평가기준과 국가환경장기종합계획의 하위계획인 시군구 계획수립 지침 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방의제 21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지방의제21 제도화방안 연구내용을 국정과제로 보고하기 위해서는 지방의제21 관련 쟁점파악이 중요함. 또한 연구기간이 다소 부족하기 때문에 연구목차의 내용을 전부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내년 상반기 국정과제보고 계획을 염두에 두고 핵심추진 의제내용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제도화방안을 법령제정 및 정비에 초점을 둘 경우 국가지속가능발전촉진법의 신설과 지방자치법, 국토계획법,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되어야 함.

WSSD 후속과제의 법제화, 지방의제21 자체를 제한적으로 활성화하는 법, 행정부 조례 준칙 등도 지방의제21 제도화에 기반이 될 수 있는 연구과제이며, 국토계획법 등에 지속가능성을 담보방안도 연구과제임.

4. 향후계획

지방의제21 제도화방안 공청회

.. 지방의제21 제도화방안 연구보고서 1차 시안 완성 후 동 소위 주최의 공청회 개최

지방의제21연구팀 제7차회의

.. 회의일시 및 장소-10.29.(금),14:00, 지속위 회의실

.. 지방의제21 제도화방안 연구를 위한 호남충청지역간담회(9.11), 수도권강원지역간담회(10.7), 영남제주지역간담회(10.16)에서 나온 제안의견과 검토의견을 연구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토의함.

지방의제21소위원회 제3차 회의

.. 회의일시 및 장소- 11.4.(목), 11:00, 지속위 회의실

.. 지방의제21 제도화방안 연구를 위한 호남충청지역간담회(9.11), 수도권강원지역간담회(10.7), 영남제주지역간담회(10.16)에서 나온 제안의견과 검토의견이 수립된 동 연구팀의 연구계획과 연구주요내용에 대해 토의함.

【별첨2】

대의협력·교육 전문위원회 지방의제21 연구팀 제1차 회의록

1. 일시 및 장소: 2004.05.11.(화),10:00~12:00, 지속위 제2회의실

2. 참석자 : 고철환(위원장), 조명래(팀장), 유문종(총무), 이창우 위원, 이기우 교수, 신형은(대의협력팀장), 김현정(대의협력팀)

3. 토의 안건

- 1) 지방의제21 실천전략 연구방향 (조명래 전문위 총무위원 발제)
- 2) 지방의제21 실천전략 수립 추진 일정

4. 토의 및 결정사항

1) 지방의제21의 제도화'방안에 관한 연구과제 제안서(별첨) 발표

· 발표: 조명래 전문위 총무 위원

2) 토의 주요 요지

· 지방의제21 활성화는 현재 지방분권 및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상황과 맞물려 당연히 추진해야할 과제임

- 지방의제21과 지방분권과의 접점이 필히 마련되어야 하며, 이는 큰 그림을 그려야 할 과제임

· 연구팀은 보고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관련 이해당사자와의 공청회, 토론회, 각계 연구 참여 등을 통해 컨센서스를 구축해야 함.

- PCSD가 일반적으로 어떤 표준 형태를 제시한다는 인상을 주면 오히려 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있음

- 지방의제21 심화방안에 대해 주로 개념적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라면 반대의견은 없을 것이나, 대통령 자문안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실천적인 제도개선방안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컨센서스 구축이 필수적임

- 지방의제 소위와 연구팀에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 당사자, 관련 시민단체, 지방분권 운동, 관련 전문가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과제 추진 소위, 팀은 균형있게 구성됨

-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에 실시하는 정책포럼, 토론회(6월 경) 등에 지속위 지방의제21 연구팀, 소위가 참여하여 컨센서스 구축을 위해 연계 노력

· 연구추진일정 관련, 5월에 연구방향, 주제 및 연구팀을 확정하고 내부 학습기간을 가진 후 6월 경 내부 워크샵, 7월 경 지방분권협의회, 지방의제21실천협의회 등 관계 단체와 협조 하에 토론회, 8월경 해외 제도·자료 조사, 9~10월 경 공청회를 거쳐 2005년 초 대통령께 국정과제 자문하는 방향으로 추진

· 연구팀 참여자에 대한 예산조치가 분명히 이루어져야 함

3) 결정사항

· 연구는 상기방향으로 추진

· 연구팀은 지방의제 소위의 승인 내지 추진, 방향제시, 협조 하에 활동

· 연구팀장은 조명래 전문위 총무위원, 연구팀 총무는 유문종 소위원총무가 맡기로 함

5. 차기 회의 (잠정)

- 1) 일시 및 장소: 2004. 5.29(토) 11:00, 지속위 제2회의실
- 2) 안건: 지방의제21 관련 최근까지의 연구성과, 실천성과 및 문제점을 조사, 평가
 - 조명래 팀장: 서울시 녹색시민위원회 분석(발제)
 - 이기우 교수: 지방의제21과 지방분권 연계방안(발제)
 - 이창우 위원: 지방의제21 제도화 방안(발제)
 - 유문종 총무: 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 회의 기간 연구성과, 활동성과에 대한 조사(발제)

대의협력·교육 전문위원회 지방의제21 연구팀 제2차 회의록

1. 일시 및 장소: 2004.06.19.(토), 11:00~13:00, 지속위 제2회의실
2. 참석자 : 조명래(연구팀장), 유문종(연구팀총무), 이정수 위원, 이기우 교수, 정규호 박사, 김종동 연구조교, 신형은(대의협력팀장), 김현정

3. 토의 안건

- 지방의제21 제도화 방안 연구방향

4. 토의 및 결정사항

1) 토의 내용

- 지방의제 21연구팀의 목적이 대통령 자문내용 생산 인만큼 시군구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보고서작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 보다는 의제21의 이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화 방안안에 초점을 맞춤

군단위의 기초의제21은 조례제정을 통한 내부활성화 방안이 바람직하며, 궁극적으로는 국가지속가능발전 전략의 차원과 병행하는 지방의제21 제도화 방안이 바람직함

제도화 방안 연구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국토관리법 등과 같은 지속가능발전과 연관된 법률, 조례 부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서울시의 4개년계획 사례와 같이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함께 환경 분야별 의제를 선정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도 분석할 필요가 있음

녹색governance 개념, NCSD와 LCSD의 연계, 영국, 독일과 같은 선진외국사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정부차원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방분권계획의 핵심이 지방행정과 주민자치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니 만큼 지방분권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방의제21은 서로 상보적이고 융합될 수 있는 것임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분권관련 Road-Map의 진행정도를 파악하고, 지방의제21의 목적, 조직, 기능, 제정, 인력 등에 관한 명확한 인식이 바탕이 되어야 함 (이기우 교수, 이정수 위원)

- 연구팀의 연구과제 수행기간 동안에 지방의제21 현장의 목소리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순회 간담회가 필요한 바 지방의제21 실천협의회 측에서 이러한 자리를 주선했음(지방의제21 실천협의회 회의 유문종 총무)

2) 결정사항

- 차기 회의에 지방의제21관련 기존 연구성과를 계속 검토함

- 지방의제21 추진현황분석 및 평가지표개발에 관한 연구(유문종위원 발제)
-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지방의제21 추진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이정수위원 발제)
- 환경거버넌스 구축방안 연구(정규호박사 발제)
- 서울의제21 평가 보고서(정규호박사 발제)
- 강릉정책포럼 관련 내용(이정수위원 발제)
- 2003년 ICLEI 총회 자료(정규호박사 발제)
- 영국의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 보고서 (조명래팀장 발제)
- 정부의 분권 및 균형발전관련 진행상황 요약(이기우교수, 김형기교수 발제)

5. 차기 회의

- 1) 일시 및 장소: 2004.07.08(목) 10:30, 지속위 제2회의실
- 2) 안건: 지방의제21 관련 최근까지의 연구성과 평가

대의협력·교육 전문위원회 지방의제21 연구팀 제3차 회의록

1. 일시 및 장소: 2004.07.08.(목), 10:30~12:00, 지속위 제2회의실

2. 참석자 : 조명래(연구팀장), 유문종(연구팀총무), 이정수 위원, 김형기, 이기우 교수, 정규호 박사, 김종동 연구조교, 신형은 팀장, 김현정

3. 토의 안건

- 1) 지방의제21 제도화 방안 연구방향(계속)
- 2) 지방의제21 제도화 방안 관련 기존 연구성과 검토

4. 토의 및 결정사항

- 1) 유문종, 이정수 위원, 정규호 박사, 조명래 교수 발제, 이기우 교수, 김형기 교수*관련 진행상황 발표

2) 주요 토의 내용

- 우리 지방의제21 추진현황 관련 주된 문제점은 지방의제21에 대한 지자체와 주민의 이해부족, 관 주도에 의한 상명하달식, 자치단체장 개인의 의지에 의존, 추진을 위한 자원 부족, 형식에 흐르는 면, 관련 당사자간 파트너쉽 부족이며, 또 향후 과제로는 국가의제와 지방의제와의 유기적 통합, 명확한 평가지표 마련, 지방의제추진기간 관계 설정, 지구적 차원의 문제에 대한 지방의 관심, 제도화, 시민의 자발적 참여, 조직운동으로부터 실질적인 실천으로 이행 등임

- 각 지자체의 특성에 맞는 지방의제 모델이 개발, 실천되어야 함
 - 환경 거버넌스 구축과 관련하여 대도시 광역 자치단체, 중소도시, 농촌의 각 지역별 역량, 발전 정도, 당면 문제의 차이에 따라 시민·NGO 주도 또는 관 주도, 지방의제21 추진체계,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등에 있어 각 지역의 실정에 맞게 이루어져야 함
 - 서울시 상당수 자치구의 지방의제21 실천 실태가 지방의 일부 중소도시 수준에 오히려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됨
 - 현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도로 제2차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 심의 중이며, 공공기관 지방이전, 혁신도시 건설, 농촌 신활력지역 발전 구상, 국가균형발전사업 평가위원회 구성, 지역혁신·균형발전 관련 교육 등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바, 이는 지속가능발전의 개념 하에 구상·추진되는 것이 아니어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 지방의제21과의 접점을 찾아 상기 사업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지방지속가능발전을 담보해야함
 - 또 현재 쏟아지는 정부추진사업을 지방에서 수용해낼 수 있는 주체가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문제가 있음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지방에 중앙정부 권한 재배분을 추진하는 바, 지방에 중앙정부 권한의 획기적 재배분과 함께 교육자치 및 학교자치, 교육과 지역사회 통합, 자치경찰 실시, 특별행정기관 설치, 주민자치강화가 중점사항임. 여기서 시민사회 활성화방안을 중심으로 지방의제21과의 접점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임
 - 개편되는 제도에 담을 구체적인 지방의제21의 내용을 제시하고 또 어디에 그 내용을 담을 것인지가 과제임
 - 지방의제21 제도화 방안 마련에 있어 지방의제21 실천 운동단체와 지방자치단체 및 일반시민 간에 관점차이가 있을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해결이 필요할 것임
 - 지역행정을 보완하는 의미의 지방의제21을 뛰어넘는 지역지속가능발전 전략 차원을 고려해야 함
- 3) 결정사항
- 차기 회의에서 지방의제21연구팀의 지방의제21 제도화방안 연구목차, 내용과 역할분담을 결정
 - 연구내용 확정 이후 지방의제21 제도화방안 관련 지역순회 간담회 또는 세미나 개최 계획 마련(유문종위원 계획)

5. 차기 회의

- 1) 일시 및 장소: 2004.07.20(화) 10:30, 지속위 제2회의실
- 2) 안건: 지방의제21 제도화 방안 연구목차 및 역할분담

대의협력·교육 전문위원회 지방의제21 연구팀 제4차 회의록

1. 일시 및 장소: 2004.07.20.(화), 10:30~12:00, 지속위 제2회의실
2. 참석자 : 조명래(연구팀장), 유문종(연구팀총무), 이정수 위원, 기우 교수, 정규호 박사, 김종동 연구조교, 신형은 팀장, 김현정

3. 토의 안건

- 지방의제21 제도화 방안 연구방향(계속)
 - 지방의제21 제도화방안 연구보고서 목차 및 내용
 - 지방의제21 제도화방안 연구 역할분담 및 진행방범

4. 토의 및 결정사항

- 1) 유문종, 위원, 정규호 박사, 조명래 연구팀장 연구계획서 발표

2) 주요 토의 내용

- 지방의제21 제도화방안 연구보고서에는 한국 지방의제21의 현황, 한국형 지방의제21모델(Ideal Type), 기초, 광역지자체, 환경부, 중앙정부 역할, 지방의제21 제도화 관련 각종 법률 법제화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지방의제21의 실질적인 활성화와 지방분권·균형발전에 지속가능발전 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기초생활권단위의 커뮤니티역량 강화방안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음
- 지방의제21 제도화 방안 연구보고서의 목차는 서론, 지방의 지속가능발전과 녹색분권, 한국 지방의제21 평가와 문제점, 해외사례, 지방의제21의 제도화를 위한 방향, 지방의제21의 목표와 내용, 지방의제21추진을 위한 기구의 제도화, 지방의제21과제의 제도화, 지방의제21의 법·제도적 기반 등으로 구성함
 - 해외사례 분석에서는 영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연구하고 필요시 호주 멜버른, 독일, 스웨덴 사례도 벤치마킹할 수 있으며, 자자체별 역할, 행정과 의제의 통합 과제, 지방의제21 제도화 부분에 교육부분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음
 - 지방의제21 법·제도적 기반 연구를 위해서는 지속가능성 구현을 위한 지방자치조직의 재편, 지방자치 내에서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위상과 역할,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내부구조와 운영,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관계 등을 포함하는 추진기구 제도화 방안과 지방의제의 지방지속가능발전전략화, 생태환경부문, 생산소비부문, 토지이용건설교통, 교육, 지역사회통합부문에서의 행정과 NGO의 과제를 포함하는 과제 제도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선행하는 것이 좋음

3) 결정사항

- 차기 회의에서 지방의제21 제도화방안 연구목차와 집필분담을 확정 한 후, 집필분담별 세부목차에 대하여 토의함
 - 지방의제21연구팀은 연구목차가 확정된 후, 이를 지방의제21소위원회, 대외협력교육전문위원회의 토의 안건으로 상정함
 - 지방의제21 제도화 방안 지역간담회 계획을 지방의제21 소위원회에서도 토의함

5. 차기 회의

- 1) 일시 및 장소: 2004.08.03(화) 10:30, 지속위 제2회의실
- 2) 토의 안건
 - 지방의제21 제도화방안 연구목차(확정)
 - 지방의제21 연구팀의 연구보고서 집필분담별 세부목차
 - 지방의제21 제도화 방안 지역간담회(또는 워크숍)계획안

대외협력·교육 전문위원회 지방의제21 연구팀 제5차 회의록

1. 일시 및 장소: 2004.08.03.(화), 10:30~12:00, 지속위 제1회의실
2. 참석자 : 조명래(연구팀장), 유문종(연구팀총무), 이정수 위원, 김종동 연구조교, 신형은 팀장, 김현정
3. 토의 안건
 - 지방의제21 제도화 방안 연구방향(계속)
 - 지방의제21 제도화방안 연구보고서 목차 및 내용
 - 지방의제21 제도화방안 연구 역할분담 및 진행방법
4. 토의 및 결정사항
 - 1) 주요 토의 내용
 - 지방의제21 제도화 방안에 관한 연구보고서의 목차 및 역할분담 수정.
 - 서론(조명래), 지방의 지속가능발전과 녹색분권(조명래), 한국 지방의제21 평가와 문제점(유문종, 이정수), 해외 사례(정규호), 지방의제21의 제도화를 위한 방향(조명래), 지방의제21추진을 위한 기구의 제도화(유문종, 이기우), 지방의제21과제의 제도화(이정수, 정규호), 지방의제21의 법·제도적 기반(이기우) 등으로 구성함.
 - 2) 결정사항
 - 차기 회의에서 지방의제21 제도화방안 집필분담별 세부목차에 대하여 토의함
 - 지방의제21 제도화 방안에 관한 지역간담회 및 공청회 가짐
 - 1) 9월 11일(토) : 호남권(광주) 간담회
 - 2) 9월 21~23일 중 : 수도권 간담회
 - 3) 10월 16일(토) : 영남권(부산) 간담회
 - 4) 11월 중 공청회
 - 10월 말 내지 11월 초까지 제1차 연구시안 작성

5. 차기 회의

- 1) 일시 및 장소: 2004.08.21.(토) 10:30, 지속위 제2회의실
- 2) 토의 안건
 - 지방의제21 제도화방안 집필분담별 세부목차의 내용개요
 - 지방의제21 제도화방안 지역간담회(또는 워크숍)구체적 계획안

대외협력·교육 전문위원회 지방의제21 연구팀 제6차 회의록

1. 일시 및 장소: 2004.08.27.(금), 10:30~12:00, 지속위 제2회의실

2. 참석자 : 조명래(연구팀장), 유문종(연구팀총무), 이정수 위원, 정규호 연구위원, 신형은 팀장, 김현정

3. 토의 안건

- 지방의제21 제도화방안 연구방향(계속)
 - 지방의제21 제도화방안 집필분담별 세부목차의 내용개요
- 지방의제21 제도화방안 지역간담회 계획안

4. 토의 및 결정사항

1) 주요 토의 내용

- 지방의제21 제도화 방안에 관한 연구보고서의 목차와 내용 보완
 - 서론(조명래), 지방의 지속가능발전과 녹색분권(조명래), 한국 지방의제21 평가와 문제점(유문종, 이정수), 해외 사례분석(정규호), 지방의제21의 제도화를 위한 방향(조명래), 지방의제21 과제의 제도화(이정수, 정규호), 지방의제21의 추진을 위한 기구의 제도화(유문종), 지방의제21의 제도화 기반(이기우) 등으로 목차를 수정 보완함.
 - 서론에서는 주민참여의 원칙을 중요하게 기술함.
 - 한국 지방의제21 평가와 문제점 부분에서는 지방의제21 사무국 코디네이터의 역할에 대한 점검내용을 포함함.
 - 해외사례분석 부분에서는 각 국 사례 연구 시 지속가능발전의 개념, 지방의제21 주관기구, 지방의제21의 행정기구 내 실행방법(체계)을 포함하여 구성함으로써 연구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함.
 - 지방의제21의 제도화를 위한 방향에서는 지방지속가능발전전략을 토대로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LCSD)위상을 정립하는 내용을 포함함.
 - 지방의제21 과제의 제도화에서는 WSSD 이행계획, 유엔 의제21, 국가지속가능발전 전략의 내용을 토대로 지방의제21과 지방지속가능발전 전략의 유기적 연계방안, stakeholder 및 주체의 역할, GO와 NGO의 협력적 파트너십 구축 방안의 내용을 제시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함.
 - 지방의제21의 기구의 제도화 부분에서는 주민참여의 원칙을 기반으로 하여 행정과 의제가 병행, 통합되는 방향이 바람직함. (예) 충남, 담양
 - 지방의제21의 제도화기반 부분에서는 지방의제21의 추진을 위한 기구의 제도화와 지방의제21 과제의 제도화 부분에서 필요하다고 제시된 법제화 내용을 토대로 최종 정리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제시함.

2) 결정사항

- 연구보고서는 9월 7일(화), 12:00 까지 완성, 지속위로 송부하고, 각 연구내용에 대해서 파워포인트 4~10장으로 정리하여 김종동 연구조교에게 전달하여 지역간담회의 자료로 사용함.
 - 연구보고서의 각 집필 책임자는 이후 지역간담회 발표자와 동일함.
- 지방의제21 제도화 방안에 관한 지역간담회 일정 결정
 - 9월 11일(토), 11:00, 광주시청 : 호남(광주)·충청지역 간담회
 - 9월 23일(목), 10:00, 지속위 제1회의실 : 서울·수도권·강원지역 간담회

10월 16일(토) : 영남(부산)·제주지역 간담회
 공청회는 제1차 연구시안 작성 후 이를 토대로 개최함.

5. 차기 회의
 : 추후 결정함

【별첨3】

지속가능한 분권을 위한

‘지방의제21의 제도화 방안’ 연구목차

2004.9.10

1. 서론 (조명래) (3)

- 1.1 연구목적
- 1.2 주요연구내용
- (1.3 연구내용과 범위)
- (1.4 연구방법)

2. 지방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녹색분권 (조명래) (15)

- 2.1 지속가능한 발전의 지방화
- 2.2 지방지속가능한 발전의 조건: 분권과 지방의제21의 통합
- 2.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방의제21의 역할
 - 지방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역할
 - 녹색(의 기준으로) 분권을 유도하는 역할
 - 지방거버넌스 혹은 참여지방자치를 활성화하는 역할
- (2.4 자치단체 유형별 제도화 방향)

3. 한국 지방의제 21의 평가와 문제점 (유문종) (20)

- 3.1 지방의제21 전개과정 및 추진내용, 방식, 결과에 대한 분석
 - 3.1.1 한국 지방의제21의 도입과 정착, 확산과정 검토
 - 3.1.2 지방의제21 추진방식 및 결과
- 3.2 지방의제21의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
- 3.3 지방의제21의 한계와 문제점

4. 해외사례분석 (정규호) (20)

: 지방의제21의 제도적(자치체계 내에서) 위상, 내용, 추진체계, 행·재정적 기반

3m로

일회성에 관한 것

내용은?

지방의제21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내용

간기적

기초적 리 1112의 일회성에

정규호

SD를 통해 해답

- 16 -

【별첨4】

대외협력·교육전문위원회 지방의제21연구팀'지방의제21제도화방안'호남,충청지역 간담회 회의록

1. 일시 및 장소: 2004.09.11(토), 11:00~13:30, 광주시청 3세미나실(2F)

2. 참석자 : 조명래(연구팀장), 유문종(연구팀총무), 이정수 위원, 정규호 선임연구원, 김종동 연구조교, 김재병(전주의제21추진협의회 사무국장), 김정옥(대전의제21추진협의회 사무국장), 김종일(광주전남발전연구원 연구원), 설준수(광주시 남구청 환경행정팀장), 성기원(늘푸른예산21추진협의회 사무국장), 이강주(충북청풍명월21추진협의회 사무국장), 이복남(그린순천21추진협의회 사무국장), 이재승(푸른전남21협의회 이사), 장화선(푸른광주21협의회 사무국장), 최길성(푸른전남21협의회 사무국장), 최진하(푸른충남21추진협의회 사무처장), 김현정(대외협력교육팀)

3. 토의 안건

지방의제21 제도화 방안

.. 사회: 유문종(지방의제21 연구팀 총무)

.. 제1부 발표주제 및 발표자

... 발표1 : 지방의 지속가능발전과 녹색분권(조명래 단국대 교수)

... 발표2 : 한국 지방의제21의 평가와 문제점(유문종 전국협의회 사무처장)

... 발표3 : 해외사례 분석(정규호 바람과물연구소 선임연구원)

... 발표4 : 지방의제21의 제도화를 위한 방향(조명래 단국대 교수)

... 발표5 : 지방의제21 과제의 제도화(이정수 녹색미래 사무총장)

... 발표6 : 지방의제21 추진을 위한 기구의 제도화(이정수 녹색미래 사무총장)

.. 제2부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4. 토의 사항

가. 토의 주요 요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지방의제21 제도화방안'을 대통령국정자문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의제21을 지방자치(녹색분권)와 접목하여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고 지방자치의 중심체로 자리매김하는 통합적 지방발전모델로 제시하고자 함.

.. 동 간담회는 호남,충청지역 지방의제21관련 현장활동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동 방안 연구에 반영하고자 하는 취지로 개최

녹색분권을 도입한 지방의제21 제도화방안은 매우 바람직하며, 특히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중앙으로부터 이양된 지방의 행정권한, 재정권한 계획 등에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계획이 함께 검토될 수 있는 방안 연구가 필요

한국 지방의제21의 문제점으로는, 지방의제21의 제도화 기반 및 재정지원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이며, 각 지방의 지방의제21의 현황은 다르지만 지방자치법, 국토계획법, 지방분권법 등과 같은 기존법의 정비와 국가지속가능발전촉진법과 같은 신규 모법의 제정을 통해 지방의제21을 제도화하는 방안이 공통된 핵심과제로 제시될 필요성이 있음.

.. 국가지속가능발전촉진법에는 지방의제21을 활성화할 수 있는 내용의 학교교육과 사회교

육이 제도적으로 운용될(handling)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야 함.

2005년 UN 환경총회에서 환경교육10년이 선언될 예정인 바, 지속가능발전위원회(PCSD)도 사람의 행동과 사고를 변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정계획하의 교육제도 개선안을 연구해야 함.

..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 농민대상의 지속가능발전 환경교육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임.

한국 지방의제21 우수사례는 적극 발굴, 검토하여 이를 토대로 지방의제21의 모델 및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도 의의가 있음.

지방의제21과 지방행정간의 유기적인 연계를 위해서는 지방의제21은 NGO영역에서, 행정은 GO의 영역에서 양간의 협력과 책임을 전제로 한 제도화가 이루어져야 함.

.. 모든 행정영역에서 지속가능성을 전제로 한 정책결정 및 집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GO의 역할강화가 필요한 한편, 기존 행정분야(특히 교통, 건설 등)에서 GO의 부족한 부분을 NGO가 건인, 보완하는 적극적인 관계설정이 필요함.

.. 한편 기업의 지속가능성도 매우 중요한 만큼 복지자본주의 이론에 근거한 기업의 참여부분에 대한 연구도 필요함.

나. 결정사항

지방의제21 제도화방안 연구를 위한 수도권,강원지역 간담회는 지속위에서 개최하되 참석하실 각 지역활동가, 전문가 분들에게 대해서는 유문종, 이정수 위원님의 추천을 받음.

5. 차기 간담회

가. 지방의제21 제도화방안 연구를 위한 수도권,강원지역 간담회: 10월 7일(목), 10:00, 지속위 제1회의실

나. 지방의제21 제도화방안 연구를 위한 영남,제주지역 간담회: 10월 16일(토), 11:00, 부산(장소미정)

지방의제21제도화방안 연구를 위한 수도권, 강원지역 간담회 결과

1. 간담회 개요

가. 일시 및 장소: 2004. 10. 7. (목), 10:00, 지속위 제1회의실

나. 참석자: 조명래(연구팀장), 유문종(연구팀총무), 이정수, 정규호, 김종동 연구팀, 박한왕(인천 남구의제 실행위원장), 김정열(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김준식(전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운영위원장), 김충관(수원환경운동센터 사무처장), 류영신(인천의제 사무처장), 박남순(푸른동해21추진협의회 사무국장), 복기만(인천남동의제 사무국장), 신윤관(안산의제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 여진구(생태보전시민모임 사무처장), 염태영(수원환경운동센터 대표), 이창우(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이한구(인천계양의제총괄간사), 정명섭(청정강원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 정선태(청정화천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 홍진표(그린신택백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 고재경 팀장, 김현정

2. 간담회 순서

가. 「지방의제21 제도화방안」 발표

1) 발표1 : '지방의 지속가능발전과 녹색분권',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 교수

- 2) 발표2 : '한국 지방의제21의 평가와 문제점', 유문종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 사무처장
- 3) 발표3 : '해외사례 분석' 정규호 바람과 물연구소 선임연구원
- 4) 발표4 : '지방의제21의 제도화를 위한 방향'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 교수
- 5) 발표5 : '지방의제21 과제의 제도화', 이정수 녹색미래 사무총장
- 6) 발표6 : '지방의제21 추진을 위한 기구의 제도화, 유문종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 사무처장

나.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3. 주요 토의내용 및 결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지방의제21 제도화방안'을 대통령국정자문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의제21을 지방자치(녹색분권)와 접목하여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고 지방자치의 중심 제도로 자리매김하는 통합적 지방발전모델로 제시하고자 함.

.. 동 간담회는 수도권, 강원지역 지방의제21관련 현장활동가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동 방안 연구에 반영하고자 하는 취지로 개최하였음.

현재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계획이나 정책에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지역차원에서 지역혁신협의회가 지역개발 관련 인사나 기구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서 문제가 심각함. 따라서 분권화 과정에 지방의제21의 주제적 참여방안 등이 연구될 필요가 있음.

지방의제21의 실현원칙인 거버넌스를 위해서는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토대로 민간, 행정, 기업이 협력하여 사업을 구상하고 예산을 마련해야하며, 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원칙으로 진제되어야 함.

.. 의제21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토대로 생태, 경제, 사회 관련 사안에 대해 시민사회, 정부, 시장(기업)이 함께 논의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으며, 지역에서 정치와 행정 사이에서 시민의 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화되는 것이 바람직함.

.. 지방의제21 추진에 있어 지역적 편차가 존재하는 만큼 제도화 추진에 있어 이러한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해야 함. 특히 민간, 행정, 기업간의 파트너십이 부족한 상황에서 제도화를 추진할 경우 지역적 자생력이 훼손될 수 있으므로 지방의제21의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 지방의제21에 대한 시민의 인식이 20~30%도 되지 않는다면 지방의제21 제도화 관련 법규가 실효성을 얻기 힘든 만큼 교육과 홍보방안을 제시하는 것도 필요함.

광역의제는 광역단위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하고 사업의 선택과 집중, 지방의제21의 평가 등을 통해서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도록 하며, 향후 지방의제21의 작성과 추진은 기초단위의 지방의제21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기초의제 활성화에 대한 비전 제시가 필요함.

.. 제도화 단계에서는 행정이 주체가 되어 지방의제21을 실천하도록 하고 의제 추진기구는 민간의 역량을 접목시키는데 집중해야 함.

현 지방의제21의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는 제도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며, 형식적인 제도화인 법 개정, 신설과 내용적인 제도화인 제도화 과정을 동시에 포함하는 연구가 되어야 함.

.. 영국의 경우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지속가능발전을 지방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설정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의제21작성을 법정계획으로 규정하여, 의제작성 과정이 시민과 행정을 연계시키는 행정계획이 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실질적이고 독립적인 예산, 기구, 인력 확충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4. 향후계획

.. 지방의제21 제도화방안 연구를 위한 영남, 제주지역 간담회

.. 간담회 일시 및 장소-10.16.(토), 11:00, 부산시청 국제 제2소회의실

지방의제21제도화방안 연구를 위한 영남, 제주지역 간담회 결과

1. 간담회 개요

가. 일시 및 장소: 2004. 10. 16. (토), 11:00, 부산시청 국제 제2소회의실

나. 참석자: 조명래(연구팀장), 유문종(연구팀총무), 이정수, 김종동 연구팀, 권재효(제주도의제21협의회 사무처장), 류광태(녹색도시부산21추진협의회 사무국장), 류병윤(맑고푸른대구21추진협의회 사무국장), 류성필(최남단청정환경21추진협의회 부의장), 심수택(경북지방의제21운영위 사무국장), 윤현수(아름다운남구21추진협의회 확인평가분과위원장), 이현(늘푸른거제21시민위원회 위원장), 임희자(녹색경남21추진협의회 사무국장), 주용도(녹색도시창원21추진위원회 사무국장), 김현정

2. 간담회 순서

가. 「지방의제21 제도화방안」 발표

- 1) 발표1 : '지방의 지속가능발전과 녹색분권',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 교수
- 2) 발표2 : '한국 지방의제21의 평가와 문제점', 유문종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 사무처장
- 3) 발표3 : '해외사례 분석'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 교수
- 4) 발표4 : '지방의제21의 제도화를 위한 방향'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 교수
- 5) 발표5 : '지방의제21 과제의 제도화', 이정수 녹색미래 사무총장
- 6) 발표6 : '지방의제21 추진을 위한 기구의 제도화, 유문종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 사무처장

나.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3. 주요 토의내용 및 결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 신국토구상에 지속가능발전의 비전이 전무한 상황에서 '지방의제21 제도화방안'을 내년 대통령국정자문과제로 추진, 연구 중에 있으며, 지방의제21을 지방자치(녹색분권)와 접목하여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고 지방자치의 중심제도로 자리매김하는 통합적 지방발전모델로 제시하고자 함.

.. 동 간담회는 영남, 제주지역 지방의제21관련 현장활동가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동 방안 연구에 반영하고자 하는 취지로 개최되었음.

.. 그간 지역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제도화방안 연구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며 시민과 NGO의 주도적 역할에 대해서도 제시할 예정임.

.. 중앙정부차원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능력을 배양하는 녹색분권의 개념 도입은 긍정적이며 이후 연구에서 녹색분권의 실제적인 내용들이 제시되기를 바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방의 개발관련 계획과 방향에 대하여 지속가능발전에 기반한 실용적이고 현실성있는 대안 연구가 필요함.

.. 특히 지구단위계획, 도시기본계획, 환경기본계획 등에 지방의제21의 가치가 실현되도록 개

발계획 중에 있는 신도시들의 사례연구도 포함되어야 함.

지방의제21은 환경시민단체 중심인 것은 사실이나 지역경제, 노인청소년 복지 부분 등을 포함하는 확장된 조직마련 근거가 제시되어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이를 총괄하는 지속가능국부서가 신설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필요

.. 지속가능발전전략이 궁극적으로 행정계획 상의 법정전략으로 될 때까지 민관협력이 필수적이고, 우선적으로 관이 더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지방의제21 조례에서 사무국 규정이 더 명확해야 함.

.. 지방의제21 업무의 지속성을 위해서 관계공무원들의 잦은 인사이동은 지양할 필요가 있음.

.. 단기적인 제도화 전략으로는 조례 준칙 하에 지방지속위가 신설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서울 녹색위의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타 시,도내 적용가능성 여부와 지구단위에 대한 광역단체의 결정권한을 군,구 단위의 기초단체로 이양하는 단계적인 계획도 제시될 수 있기를 바람

생태환경부문, 생산소비부문, 토지이용/건설/교통부문, 지역사회통합/교육부문의 과제의 제도화를 위해서는 지방의제21이 담당하는 역할로 제시되는 것이 이상적이기는 하나 현재 조직의 상황 속에서는 과부하될 여지가 있으므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고 각종 특별법과 내용이 상충되지 않도록 고려가 필요함.

.. 각 부문의 과제가 제도화되기 위해서는 행정 역할과 의제 역할이 명시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

.. 지방의제21 예산 심의 권한이 지방의회에 국한되어있기 때문에 예산확보의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며, 남제주군의 경우 환경기본계획 심의기능을 지방의제21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사례를 분석하여 벤치마킹해 주기를 바람.

일부 광역단위와 기초단위 의제21의 경우 법적인 근거마련이 없어서 기구설립기반 자체가 전무한 실정임. 기반 마련을 위한 지속가능발전촉진법의 신설은 필수적이며 신설시 생겨나는 각종 법안들과 상충적인 부분에 대한 연구 필요

.. 지속가능발전촉진법에는 지속위와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와의 역할과 관계설정에 대해 규명 필요

지역적인 다양성을 기반으로 가장 필수적이며 표준적인 지방의제21 제도화방안이 제시될 예정이며, 예산의 경우 지속가능발전특별회계방안 등과 같은 새로운 재원 발굴방안도 연구될 예정임.

4. 향후계획

지방의제21 제도화방안 공청회

.. 지방의제21 제도화방안 연구보고서 1차 시안 완성 후 공청회 개최 예정

【별첨5】 지방의제21 제도화방안 연구목차 대비 지역간담회 의견정리(안)

연구목차		관련 지역간담회 의견
2. 지방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녹색분권	2.1 지속가능한 발전의 지방화	- 국가 지속가능발전전략의 실천적 측면과 연계 필요
	2.2 녹색분권으로서 지속가능한 발전	- 정부의 지방분권계획 로드맵의 진행정도를 파악하고, 지방의제21의 목적, 조직, 기능, 재정, 인력 등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바탕이 되어야 함. - 균형발전위의 제2차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 공공기관 지방이전, 혁신도시 건설, 농촌신활력지역 발전구상, 국가균형발전사업 평가위원회 등에 대한 평가 - 지역혁신협의회의 인사나 기구 구성에 있어서 지방의제21의 주체적 참여방안
	2.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방의제 21의 역할	- 주민과 NGO의 참여의 원칙 -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연구도 포함
	2.4 지방의제 21의 역할방향	- 의제21의 시민의회 역할
	2.5 자치단체 유형별 제도화 방향	- 각 지자체의 특성과 지역적 특수성에 기반한 지방의제 모델의 개발
3. 한국 지방의제 21의 평가와 문제점	3.4 지방의제 21의 한계와 문제점	- 지방의제21에 대한 지자체와 주민의 이해부족, 관 주도에 의한 상명하달식 계획, 자치단체장 개인의 의지, 추진을 위한 재원과 자원 부족, 관련당사자간 파트너십 부족 등에 관한 실례 제시 - 지방의제21 사무국 코디네이터의 역할에 대한 점검 필요 - 한국 지방의제21 우수사례 적극 발굴하여 모범 사례 제시 (참조: 서울시의 녹색시민위 4개년 계획사례- 환경분야별 의제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사례) (참조: 환경기본계획 심의기능을 남제주군 지방의제가 담당하고 있는 사례)
4. 해외사례분석		- 각 해외사례 분석 시 지속가능발전의 개념, 지방의제21 주관기구, 지방의제21의 제도적 위상, 내용, 추진체계, 지방의제21의 행정기구 내 실행방법, 행·재정적 기반 등 포함
5. 지방의제 21의 제도화를 위한 방향	5.1 지방의제 21의 목표설정과 내용	- WSSD 이행계획, 유엔 의제21,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의 내용을 토대로 지방의제21과 지방지속가능발전 전략의 유기적 연계방안 제시 - 지방지속가능발전전략으로서의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상 정립
6. 지방의제21 과제의 제도화		- WSSD 이행계획, 유엔 의제21, 국가지속가능발전 전략의 내용을 토대로 stakeholder와 주체의 역할 - 법제화 내용 구체적으로 제시 필요
7. 지방의제21의 추진을 위한 기구의 제도화		- 법제화 내용 구체적으로 제시 필요 - GO와 NGO의 협력적 파트너십 구축방안 - 정부혁신지방분권위가 추진 중인 중앙정부권한의 대폭 이양에 따른 교육자치, 학교자치, 교육과 지역사회 통합, 자치경찰실시, 특별행정기관설치, 주민자치강화를 위한 기구의 역할
8. 지방의제의 제도화 기반	8.1 국가지속가능발전촉진법의 제정	-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관계 등을 포함하는 추진기구 관련 내용, 지방의제21의 위상과 역할 규정 포함 - 지방의제21을 활성화하는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의 제도화방안 포함
	8.3 지방자치조직의 재편	- 지속가능성 구현을 위한 지방자치조직의 재편, 지방자치 내에서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위상과 역할,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내부구조와 운영